

보도자료

(농림부)

- 제공일 : 2006. 1. 18.
- 제공자 : 농림부 여성정책과
- 과 장 : 김 미 숙
- 사무관 : 이 성 주
- 전 화 : 500-1609

이 자료는 2006년 1월 1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덜어드립니다” - 사고시 영농도우미 지원도 시작

-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또한, 사고를 당한 농업인의 영농과 고령 단독농가 등의 가사를 도와 주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 87.5천원/월(0세), 77(1세), 63.5(2세), 39.5(3~4세), 79(5세)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영농도우미’는 농지소유 3ha미만, 65세미만 농업인이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 사고를 당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게 된다.
 - ‘가사도우미’는 65세이상 농업인이 혼자 살거나 손자녀와 같이 사는 취약계층의 농업인과 65세 미만 농가중 사고·질병 등으로 1월이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올해는 우선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 '영농도우미'의 경우 최대 10일간 399,000원(남자)~266,000원(여자)을 지원하고,
 - '가사도우미'는 자원봉사자 등이 정기적으로 고령·취약농가를 방문하여 가사 지원을 실시한다.
- 효율적인 도우미 지원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유희인력을 연계 활용할 계획으로 읍·면·동 지역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농협 도지역본부에 '인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영농도우미'는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또는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에 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가사도우미'는 지역농협에서 관내 지원대상 고령·취약농가를 조사하여 확정된 후 지원하게 된다.
-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유희인력이 도우미로 참가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및 취약농가 인력지원제도

1. 추진배경

- 여성농업인에게 육아문제가 농업생산활동의 큰 제약요인인 반면, 보육 시설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
- 농업인은 농작업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일손부족으로 영농을 지속 하는데 애로가 심하고, 고령단독농가 등 독자적인 가정생활을 유지 하기 어려운 노령가구가 증가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 16.2%('95)→21.7('00)→27.8('03)→29.3('04)
-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사고발생농가와 고령·취약농가에 각각 영농 및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을 신규사업으로 도입 실시

2. 사업별 지원내용 및 절차

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

※ 지원인원 : 48,300명

□ 지원금액

- 월별로 지급하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0세)87.5천원, (1세)77, (2세)63.5, (3-4세)39.5, (5세)79

□ 지원절차

-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를 검토 확정하고 지원금을 농업인
계좌에 입금

□ 기대효과

- 젊은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경영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 실현

나. 취약농가 인력지원('06년에는 82개 시·군 시범실시, 실시지역: 붙임 참조)

1)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농지소유 3ha미만, 65세미만 농업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 지원
 - 사고농업인 :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06년 계획 : 4천명)

※ 한해 평균 1만여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됨

□ 지원내용

- 사고농가가 최대 10일간 영농도우미를 활용토록 하고 농촌평균
임금의 70%를 지원
 - 농촌평균임금/1일 : 남자 57천원, 여자 38천원

□ 지원절차

- 사고농가가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지역농협(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에 신청
- 지역농협에서 사고농업인 확인 후 영농도우미 지원
 - ※ 농협도지역본부에 설치한 '인력지원단' 에서 영농도우미 인력 연계 지원
 - ※ 전국의 읍·면 지역 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신청창구를 상시 개설하여 도우미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지원단' 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지역농협에서 영농도우미에게 임금 지급(계좌입금)

□ 기대효과

- 사고가 난 경우에도 지속적인 영농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
- 도시와 농촌의 유희인력을 영농도우미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농촌의 일손문제 해결

2)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 지원대상

- 65세이상 고령단독·편조부(모)(조부와 손자녀, 조모와 손자녀)농가,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질병 등으로 1월 이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06년계획 : 27천 농가)
-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타 기관·단체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는 제외

□ 지원내용

-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농가를 방문하여

청소, 세탁, 주거환경정비 등 가사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의 경우 여비, 식대 등 실비(10,000원/1일) 지원
- 자원봉사자 중 미장, 목공 등의 경우 난이도를 고려한 실비 지급(30,000원/1일), 부득이 유급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엔 농촌 평균임금 지급

※ 농협도지역본부에 설치한 '인력지원단' 에서 가사도우미 연계 지원

□ 지원절차

- 지역농협에서 관내 지원대상 고령취약농가 사전 조사
 - 취약농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원사항 관리
-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계획 수립
-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농가 방문 가사지원

□ 기대효과

- 고령·취약농업인들의 가사활동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

<붙임>

'06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범 실시지역

시·도별	시범실시 지역(시·군)
경기(9)	화성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김포시
강원(9)	평창군, 영월군, 철원군,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삼척시, 정선군, 양양군
충북(6)	청원군,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충주시, 제천시
충남(11)	청양군, 태안군, 공주시, 예산군, 보령시, 연기군,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홍성군, 금산시
전북(7)	장수군, 남원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김제시
전남(15)	곡성군, 영광군, 담양군, 영암군, 해남군, 장성군, 무안군, 강진군, 보성군, 나주시, 신안군, 순천시, 고흥군, 함평군, 장흥군
경북(12)	영양군, 청송군, 김천시, 문경시, 영덕군, 울진군, 구미시, 예천군, 영주시, 경산시, 의성군, 청도군
경남(10)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남해군,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제주(2)	북제주군, 남제주군
인천(1)	강화군
계	82개 시·군